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000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00호, 2026.00.00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6년 00월 00일

보건복지부장관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I.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‘항HMGCR 항체[정밀면역검사]의 급여기준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항 목	제 목	세부인정사항
항HMGCR 항체[정밀면역검사]	항HMGCR 항체[정밀면역검사]의 급여기준	괴사성 근육병증 진단을 보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항HMGCR 항체 [정밀면역검사]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. - 다 음 - 1. 급여대상 근위부의 근력약화, 혈청 크레아틴키나아제(CK) 수

항 목	제 목	세부인정사항
		<p>치의 지속적인 상승 등 임상적으로 괴사성 근육병증이 의심되는 환자</p> <p>2. 인정횟수 괴사성 근육병증 진단시 1회 인정</p>

부 칙

이 고시는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개 정			비고
항목	제목	세부인정사항	항목	제목	세부인정사항	
I. 행위 제2장 검사료			I. 행위 제2장 검사료			
<신설>	<신설>	<신설>	항HMGCR 항체[정밀 면역검사]	항HMGCR 항체[정밀 면역검사]의 급여기준	<p>괴사성 근육병증 진단을 보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항HMGCR 항체 [정밀면역검사]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다 음 -</p> <p>1. 급여대상 근위부의 근력약화, 혈청 크레아틴 키나아제(CK) 수치의 지속적인 상승 등 임상적으로 괴사성 근육병증이 의심되는 환자</p> <p>2. 인정횟수 괴사성 근육병증 진단시 1회 인정</p>	(제정 사유) 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고시 신설